

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

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5년 2월 4일

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임용등급	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예정부서	담당직무 내용
도시계획	시간선택제 임기제 (나급)	1명	1년	도시계획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관리 및 운영서대문구 노후주거지 환경정비 종합관리계획 수립성산로 입체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도시계획분야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도시계획·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國, 市 도시계획 관련 정책 대응전략 수립그 외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

※ 근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며, 근무실적 우수 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2. 법령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

3. 응시자격 요건

○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지역, 성별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
※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○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채용직급	자 격 기 준
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	<p>*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2호에 따른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상, 도시계획분야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, 같은 법 제27조 제2항 3호(경력)에 따른 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※ 직무분야 관련학과 인정범위
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 제17조 제4항 2 의거하여 도시공학, 도시계획학 등 도시계획분야
관련 학과

※ 실무경력 인정 범위

-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대학·대학원, 연구소, 학술·연구단체,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,
도시공학, 도시개발, 도시설계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분야 경력
-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
되지 않을 수 있음
-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에 의거하여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직무
분야에서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

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○ 근무시간 : 주35시간 (1일 7시간)

○ 연 봉 액 : 48,787천원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
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○ 연봉 외 수당은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- ※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
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2. 17.(월) ~ 2. 19.(수) <3일간 09:00~18:00>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
 - ※ 대리접수 가능, 팩스·인터넷 접수·퀵서비스·택배 등을 통한 접수 불가
- 접수처 :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 (서대문구 연희로 247, 제3별관 8층 도시계획과)
 - ※ 우편 접수 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(우편환 7,000원) 동봉 제출
 - ※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
 - ※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부
 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 - ※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 - ※ 대리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- 수입증지 판매처 : 구청 1층 민원여권과 2번 창구, 수입증지 가격 : 7,000원

○ 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비 고
서류전형	2025. 2. 24.(월)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5. 2. 26.(수)	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면접심사	2025. 3. 5.(수)	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5. 3. 7.(금)	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
- ※ 상기 일정은 조정 가능
- 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- ※ 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, 면접일정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

○ 1차 시험(서류전형) :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
 -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된 경우 재공고하며, 재공고를 통한 추가 접수 후 2차 면접대상자 최종 결정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○ 2차시험(면접시험) :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아래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
(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)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단,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 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 - ※ 2차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 자격 부여

6.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 [첨부1] 1부

- 응시수수료 : 7,000원(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 2번 창구)
 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

○ 이력서 [첨부2]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등)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

○ 자기소개서 [첨부3] 1부

○ 직무수행계획서 [첨부4] 1부

○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[첨부5] 1부

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[첨부6]

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
○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 사본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사본 제출 가능하며 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

○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(근무처별) 1부(원본)

- 해당기관(회사)의 관인(법인 인장)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 (응시자격 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 범위 해당 업무)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-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[첨부7]' 추가 제출

○ 자격증 사본 1통(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(단, 원본 제출서류의 경우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)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,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 담당 (☎ 광제상 02-330-1614)